

2024년 상반기 DB손해보험 현황

기간 : 2024.1.1-2024.6.30

DB손해보험(주)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목 차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II. 재무·손익

III. 자산의 건전성

IV. 자본의 적정성

V. 수익성

VI. 위험관리

VII. 기타 일반현황

VIII. 재무제표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당기 (24.2Q)	전년 동기 (23.2Q)	증 감
재무·손익	자 산	493,617	443,543	50,074
	부 채	408,817	361,925	46,892
	자 본	84,800	81,618	3,182
	당기순이익	11,241	9,122	2,119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	219.1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	219.1	-
수익성 비율	운용자산이익률(A/B)	2.83	3.58	(-)0.75
	영업이익률	9.18	11.63	(-)2.45
	총자산수익률(ROA)	4.59	4.08	0.51
	자기자본수익률(ROE)	26.21	20.99	5.22

* 지급여력비율은 9월말 공시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 재무·손익 : IFRS17/9 기준

* 운용자산이익률에서 A는 투자이익에 해당하며, B는 경과운용자산에 해당함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23.2Q IFRS17/9 기준. 단, 1년 실적 산출시 '23년은 IFRS17/9, '22년은 IFRS17/IAS39 적용

'24.2Q IFRS17/9 기준

* 영업이익률의 경우, 당기 금액은 2024년 상반기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

'23.2Q IFRS17/9 기준. 단, 전 회계연도말 총자산 및 자기자본 산출시 '22년말은 IFRS17/IAS39 적용

'24.2Q IFRS17/9 기준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동기 금액은 '24년 2월말 외부감사 인으로부터 수령한 검토보고서(재작성)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 %p)

구 분		당기 (24.2Q)	전년 동기 (23.2Q)	증 감
신계약률		58.80	56.83	1.97
효력상실 및 해약률		4.00	4.03	(-)0.03
보험금지급률 (환급금 포함)		67.90	66.26	1.64
자산운용률		93.73	93.67	0.06
유지율	13회차	88.73	88.70	0.03
	25회차	73.46	77.42	(-)3.96
	37회차	68.41	64.36	4.05
	49회차	50.21	55.39	(-)5.18
	61회차	51.02	41.14	9.88
	73회차	36.70	37.46	(-)0.76
	85회차	28.42	36.46	(-)8.04

* 주요변동요인 : 보험금지급률은 67.90%로 전년 동기 대비 1.64%p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급보험금이 2,648억 증가된 사항을 반영한 값입니다. 자산운용률은 93.73%로 전년 동기 대비 0.06%p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용자산 4조 7,169억 그리고 총자산 5조 4억원이 증가된 사항을 반영한 값입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동기 금액은 '24년 2월말 외부감사인 으로부터 수령한 검토보고서(재작성)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효력상실 및 해약률'과 '유지율'의 경우 장기보험종목에 대한 지표임

II . 재무·손익

2-1.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 (24.2Q)	전년 동기 (23.2Q)	증 감
보험손익	10,973	9,028	1,945
(보험수익)	72,777	68,604	4,173
(보험서비스비용)	58,058	58,094	(-)36
(재보험수익)	970	2,849	(-)1,879
(재보험서비스비용)	4,198	3,788	410
(기타사업비용)	518	543	(-)25
투자손익	3,747	3,054	693
(투자수익)	19,438	16,236	3,202
(투자비용)	15,691	13,182	2,509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14,720	12,082	2,638
영업외손익	81	58	23
(영업외수익)	378	207	171
(영업외비용)	297	149	1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4,801	12,140	2,661
법인세비용	3,560	3,018	542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11,241	9,122	2,119

* 주요변동요인 : 당기순이익은 1조 1,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손익 전년 동기 대비 1,945억원 증가, 투자손익 전년 동기 대비 693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차이 없음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동기 금액은 '24년 2월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검토보고서(재작성)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2. 요약 재무상태표(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4.2Q)		전년 동기 (23.2Q)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현 금 및 예 치 금	7,779	1.58	5,688	1.2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111,367	22.56	107,647	24.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211,389	42.82	181,469	40.91
	상각후 원가측정 유가증권	-	0.00	-	0.00
	관계 · 종속기업 투자주식	10,192	2.06	8,605	1.94
	대 출 채 권	109,958	22.28	100,130	22.58
	부 동 산	11,874	2.41	11,851	2.67
	비 운 용 자 산	30,934	6.27	28,063	6.33
	기 타 자 산	-	0.00	-	0.00
	특 별 계 정 자 산	124	0.03	90	0.02
자 산 총 계		493,617	100.00	443,543	100.00
부 채	책 임 준 비 금	378,586	76.70	331,881	74.82
	계 약 자 지 분 조 정	-	0.00	-	0.00
	기 타 부 채	30,105	6.10	29,952	6.75
	특 별 계 정 부 채	126	0.03	92	0.02
	부 채 총 계	408,817	82.82	361,925	81.60
자본	자 본 총 계	84,800	17.18	81,618	18.4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93,617	100.00	443,543	100.00

* 주요변동요인 : 자산총계 및 부채와 자본총계는 49조 3,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7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전년 동기 대비 2조 9,920억원 증가, 책임준비금 전년 동기 대비 4조 6,705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당사의 경우 특별계정 자산 부채 분류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계정 분류의 차이가 있으나 자산, 부채, 자본 합계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동기 금액은 '24년 2월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검토보고서(재작성)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II. 자산의 건전성

3-1. 자산건전성(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p)

구 분	해당 분기 (24.2Q)	전년 동기 (23.2Q)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1,307	586	72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465,761	416,991	48,770
비율(A/B)	0.28	0.14	0.14

* 주요변동요인 : 대출채권 고정 분류 자산 증가

3-2.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가액 ¹⁾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A)	주 식	1,504	62
		출 자 금	2,290	87
		채 권	5,326	49
		수 익 증 권	91,390	120
		외화표시유가증권	9,178	11
		기타유가증권	1,679	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B)	주 식	34	(-7)
		출 자 금	0	0
		채 권	143,838	(-)7,445
		수 익 증 권	0	0
		외화표시유가증권	63,425	(-)17,017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C)	기타유가증권	4,092	84
		채 권	0	0
		수 익 증 권	0	0
		외화표시유가증권	0	0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D)	기타유가증권	0	0
주 식		10,192	0	
출 자 금		0	0	
소 계(A+B+C+D)		332,948	(-)24,054	
특별계정	주 식	16	1	
	채 권	24	0	
	수 익 증 권	68	0	
	외화유가증권	0	0	
	기타유가증권	0	0	
	소 계	108	1	
합 계		333,056	(-)24,053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특별계정은 실적배당임

IV. 자본의 적정성

4-1. B/S상 자기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4.2Q)	당분기-1분기 (24.1Q)	당분기-2분기 (23.4Q)
자본총계	84,800	84,366	86,755
자본금	354	354	354
자본잉여금	379	379	379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94,565	89,158	86,506
자본조정	(-)1,525	(-)1,525	(-)1,5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973	(-)4,000	1,041

* 주요변동요인 : 자본총계는 8조 4,8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분기말 대비 이익잉여금에서의 5,407억원 증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의 4,973억원의 감소가 반영된 값입니다.

4-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V. 수익성

(단위 : 억원, %, %p)

구분	당기 (24.2Q)	전년 동기 (23.2Q)	증감
투자이익(A)	12,552	15,603	(-)3,051
경과운용자산(B)	444,038	435,547	8,491
(1) 운용자산이익률(A/B)	2.83	3.58	(-)0.75
(2) 영업이익률	9.18	11.63	(-)2.45
(3) 총자산수익률(ROA)	4.59	4.08	0.51
(4) 자기자본수익률(ROE)	26.21	20.99	5.22

* 주요변동요인 : 총자산수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1%p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수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5.22%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기순이익이 2,119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75%p 감소하였으며, 이는 투자이익 3,051억원 감소 및 경과운용자산 8,491억원 증가가 반영된 값입니다. 당분기 영업이익률은 9.18%로 전년 동기 대비 2.45%p 감소하였습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23.2Q IFRS17/9 기준. 단, 1년 실적 산출시 '23년은 IFRS17/9, '22년은 IFRS17/IAS39 적용
'24.2Q IFRS17/9 기준

* 영업이익률의 경우, 당기 금액은 2024년 상반기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

'23.2Q IFRS17/9 기준. 단, 전 회계연도말 총자산 및 자기자본 산출시 '22년말은 IFRS17/IAS39 적용
'24.2Q IFRS17/9 기준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동기 금액은 '24년 2월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검토보고서(재작성)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VI. 위험관리

6-1.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사항

* K-ICS 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관리

6-2-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 K-ICS 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2-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K-ICS 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2-3) 재보험정책

① 개요

매년 종목별(일반/자동차/장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향후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준수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관리에 대한 출수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할 보험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의 기준과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도 평가'는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S&P BBB+ 이상 또는 A.M. Best A- 이상)
-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에 등재 여부

'집중도 평가'는 재보험사의 부도에 의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재보험사별, 국가별로 산출하여 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189,401	0	0	0
비 중	97.8%	0.0%	0.0%	0.0%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함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 대비 비중을 기재함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193,743	0	0	0	193,743
비 중	100.0%	0.0%	0.0%	0.0%	100.0%

6-3. 일반손해보험위험 관리

6-3-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3-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3-3) 가격설정(pricing)의 적정성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3-4)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① 지급준비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유지급준비금
일반	1,022,762
자동차	899,164
합계	1,921,926

주) IFRS17기준 일반손해보험 준비금 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

② 보험금진전추이

[일반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사고년도 \ 진전년도	진전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312,748	459,137	502,942	525,132	542,513
당기(당반기)-3년	321,514	497,621	541,990	579,099	-
당기(당반기)-2년	289,619	492,156	553,893	-	-
당기(당반기)-1년	377,179	673,349	-	-	-
당기(당반기)	717,174	-	-	-	-

[자동차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사고년도 \ 진전년도	진전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2,212,216	2,545,871	2,590,701	2,614,298	2,628,264
당기(당반기)-3년	2,282,079	2,643,676	2,687,666	2,711,676	-
당기(당반기)-2년	2,339,482	2,710,327	2,754,211	-	-
당기(당반기)-1년	2,598,044	2,997,520	-	-	-
당기(당반기)	2,680,730	-	-	-	-

6-3-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① 개요

매년 종목별(일반/자동차/장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향후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 부적격 재보험자에 대한 거래제한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준수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관리에 대한 출수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할 보험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의 기준과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도 평가'는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S&P BBB+ 이상 또는 A.M. Best A- 이상)
-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에 등재 여부

'집중도 평가'는 재보험사의 부도에 의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재보험사별, 국가별로 산출하여 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 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259,204	0	0	0
비중	57.2%	0.0%	0.0%	0.0%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함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 대비 비중을 기재함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438,600	2,202	0	12,672	453,473
비중	96.7%	0.5%	0.0%	2.8%	100.0%

* 기타 재보험자(무위험/무등급): 국가 재보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등) 66억원, 국내 보험사 46억원, 그 외 해외 재보험자(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PLC 등) 14억원 입니다.

6-4. 시장위험 관리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5. 신용위험 관리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6. 운영위험 관리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7. 유동성위험 관리

6-7-1) 개념 및 유동성갭 현황

① 개념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거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자금의 조달,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② 유동성갭 현황 (만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3개월이하	3개월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초과 ~1년 이하	합 계
자 산 (A)	현금과 예치금	79,199	400	1,300	80,899
	유가증권	440,415	694,974	675,943	1,811,332
	대출채권	82,805	133,308	218,611	434,724
	기 타	3,167	8,646	4,471	16,284
	자산 계	605,586	837,328	900,325	2,343,239
부 채 (B)	해약환급금	130,737	127,674	296,961	555,373
	차입부채	-	-	-	-
	부채 계	130,737	127,674	296,961	555,373
유동성갭 (A-B)		474,849	709,654	603,364	1,787,866

6-7-2) 인식 및 관리방법

잔존만기 3개월/6개월/1년 이내의 유동성 자산 대비 추정 부채 유출액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측정 중이며,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 분석을 통해 급격한 단기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산 보유하도록 관리 중입니다. 또한 단기자금조달 약정을 아래와 같이 맺어 단기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단기자금조달처 약정 현황>

구 분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차월구분	일중차월	당좌차월	일중차월	일중차월
약정금액	200억원	20억원	100억원	300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

VII. 기타 일반 현황

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해당사항 없음)

7-2. 재보험 현황

1)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반기 (24.2Q)	직전 반기 (23.4Q)	반기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137	150	(-)13
		수재보험금	148	83	65
		수재보험수수료	19	13	6
		수재차액(A)	(-)30	54	(-)84
내	출재	출재보험료	4,191	4,047	144
		출재보험금	3,871	3,565	306
		출재보험수수료	297	184	113
		출재차액(B)	(-)23	(-)298	275
순수지 차액 (A+B)		(-)53	(-)244	191	

* 주요변동요인 : 국내 순수지차액은 (-)53억원으로 전동기말 대비 19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의 수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84억 감소하였고 출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275억 증가하였습니다.

2)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반기 (24.2Q)	직전 반기 (23.4Q)	반기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501	605	(-)104
		수재보험금	241	381	(-)140
		수재보험수수료	125	148	(-)23
		수재차액(A)	135	76	59
외	출재	출재보험료	2,282	2,628	(-)346
		출재보험금	2,495	1,262	1,233
		출재보험수수료	323	284	39
		출재차액(B)	536	(-)1,082	1,618
순수지 차액 (A+B)		671	(-)1,006	1,677	

* 주요변동요인 : 국외 순수지차액은 671억원으로 전동기말 대비 1,6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외 수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59억원 증가하였고 출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1,6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7-3.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4.2Q)	직전분기 (24.1Q)
이익잉여금	94,565	89,158
대손준비금	1,122	1,250
비상위험준비금	15,868	15,495
해약환급금준비금	34,118	30,844
보증준비금	-	-

* 주요변동요인 : 이익잉여금은 9조 4,56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40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위험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373억원 증가하였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전분기 대비 3,274억원 증가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7-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7-4-1) 2023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3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양호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보통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양호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우수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보통
	7	임직원에게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양호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양호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2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3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7-4-2) 2022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해당없음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해당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명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해당없음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없음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없음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해당없음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해당없음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해당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회사는 2022년 자체 자율진단 시행으로 결과공시 대상이 아님

7-4-3) 2021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1년)
계량 지표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해당없음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해당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해당없음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해당없음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해당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1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회사는 2021년 자체 자율진단 시행으로 결과공시 대상이 아님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가. 민원 발생건수 나. 민원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가. 금융사고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7-5. 민원발생건수

민원건수 공시자료 작성양식

MB손해보험(주)

-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 등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동 민원건수는 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및 “민원건수 공시자료 작성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대상기간
 - 당분기 : 2024년 2분기(2024.4.1.~2024.6.30.)
 - 전분기 : 2024년 1분기(2024.1.1.~2024.3.31.)

1.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주2)}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자체 민원	676	620	-8.28	2.89	2.63	-9.00	
대외민원 ^{주1)}	1,011	1,088	7.62	4.34	4.62	6.45	
합 계	1,687	1,708	1.24	7.23	7.25	0.28	

주1)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2)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2. 유형별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유 형	보험모집	150	164	9.33	0.64	0.70	9.37
	유지관리	121	243	100.83	0.52	1.03	98.08
	보상(보험금)	1,395	1,163	-16.63	5.98	4.93	-17.56
	기 타	21	138	557.14	0.09	0.59	555.56
합 계	1,687	1,708	1.24	7.23	7.25	0.28	

3. 상품별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상 품	일반보험	76	54	-28.95	7.69	5.50	-28.48
	장기보장성보험	1,016	1,165	14.67	6.02	6.76	12.29
	장기저축성보험	8	8	-	2.73	4.23	54.95
	자동차보험	564	456	-19.15	10.93	8.83	-19.21
기 타 ^{주)}	23	25	8.70	-	-	-	

주) 해당 회사의 내부경영(주가관리, K-ICS 등) 관련 민원, 보험상품과 관련 없는 민원(모집인·정비업체 등이 제기하는 모집수수료, 정비수가 관련 민원 등), 보험 가입 전 보험상품 외 민원(단, 대출관련 민원 중 보험계약대출 민원은 해당 상품 기준으로 구분하되, 담보·신용대출 관련 민원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

※ '기타' 항목은 상품 외 민원으로 보유계약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건수'를 표기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합계'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3. 상품별 민원건수'의 합계는 '1. 민원건수', '2. 유형별 민원건수'의 각 합계와 일치

7-6.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및 유지율 현황

1)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 대리점				직영			중개사	기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임직원	복합 ⁸⁾	다이렉트 ⁹⁾		
불완전판매비율 ¹⁾	0.01	0.01	0.00	0.02	0.03	0.01	0.00	-	0.00	-	0.00
불완전판매건수	158	27	0	76	7	161	0	-	3	-	1
신계약건수	1,103,807	211,148	3,440	430,265	25,341	1,616,845	158	-	70,498	-	51,794

※ 신계약건수 대상기간: 2023년 07월 ~ 2024년 06월

2) 청약철회비율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 대리점				직영			중개사	기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임직원	복합 ⁸⁾	다이렉트 ⁹⁾		
청약철회비율 ²⁾	2.91	2.29	2.97	5.43	10.25	2.97	6.96	-	1.88	-	8.72
청약철회건수	32,071	4,836	102	23,363	2,597	48,067	11	-	1,322	-	4,517
신계약건수	1,103,807	211,148	3,440	430,265	25,341	1,616,845	158	-	70,498	-	51,794

※ 신계약건수 대상기간: 2023년 07월 ~ 2024년 06월

3) 유지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 대리점				직영			중개사	기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임직원	복합 ⁸⁾	다이렉트 ⁹⁾			
13 회차	유지율 ³⁾	89.90	92.67	88.54	81.41	79.93	89.33	81.37	-	86.07	-	86.38
	유지계약액	580,325	157,847	31,769	137,469	8,687	763,968	117	-	26,780	-	7,749
	대상신계약액	645,487	170,337	35,880	168,868	10,868	855,192	144	-	31,115	-	8,970
25 회차	유지율	75.01	80.15	53.53	60.41	62.47	74.05	56.15	-	70.81	-	76.95
	유지계약액	416,343	123,576	7,453	82,375	4,577	490,154	120	-	19,733	-	7,167
	대상신계약액	555,071	154,177	13,922	136,365	7,327	661,950	214	-	27,866	-	9,314
37 회차	유지율	65.78	68.42	40.31	49.79	56.03	67.75	47.42	-	59.47	-	81.67
	유지계약액	372,364	105,686	4,655	62,288	4,451	526,943	184	-	16,939	-	10,097
	대상신계약액	566,074	154,462	11,547	125,100	7,945	777,831	388	-	28,482	-	12,363
61 회차	유지율	48.49	50.00	33.46	26.42	39.99	52.90	40.81	-	34.66	-	66.38
	유지계약액	187,810	59,184	11,187	27,922	4,921	256,169	140	-	4,099	-	2,466
	대상신계약액	387,278	118,370	33,430	105,687	12,305	484,261	343	-	11,567	-	3,714

※ 대상신계약액 대상 기간 : 산출월 기준 각 회차별 이전년도 동월 신계약액
유지계약액 대상 기간 : 2023년 07월 ~ 2024년 06월

- 1)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 + 민원해지 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2) 청약철회비율 = 청약철회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3) 유지율 = 유지계약액 / 대상신계약액 × 100
- 4)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5)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 6)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 8)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 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 9)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7-7.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현황

1) 장기손해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1.47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25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12,823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1,363
보험금 청구건수 ⁴	874,799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551,228

※ 대상 기간 : 24.1.1~24.6.30

-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 2)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 제외(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 보험금 등)
- 3)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동일청구건에 지급과 부지급 공존시 지급으로 처리)
- 4)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5)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 계약자 임의해지 건 제외
- 6)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된 보험계약건(증권번호 기준, 중복 제외)

2) 자동차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0.46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00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3,089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1
보험금 청구건수 ⁴	668,250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406,316

※ 대상 기간 : 24.1.1~24.6.30

-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 2)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3)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
- 4)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피해자, 피해물 소유주 및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건 중 보험금 지급/부지급 여부가 확정된 건수(사고일자, 사고접수일자, 증권번호, 사고번호, 피해자(물) 및 피보험자 등 기준으로 산출)
* 피해서열별로 추산보험금을 책정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보험금 청구 포기건 및 피구상건 제외(다만, 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중인건은 포함)

5)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중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을 해지한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 다음의 경우는 해지건수에서 제외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지급건수(B)가 1건 이상 발생한 보험계약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중복 제외)

7-8. 사회공헌활동

7-8-1) 사회공헌활동 비전

당사는 전사 비전인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과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미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손해보험의 공익적 목적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프로미봉사단, PA(설계사)로 구성된 프로미PA봉사단 활동과 매칭그랜트 형태의 프로미하트펀드 조성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전사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은 물론 환경, 문화·스포츠 후원,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7-8-2)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Q 누적	4,474	3	○	2,986	-	7,674	-	4,668	23,520	1,124,100

주1) 2024년 상반기 누계 실적 기준임

주2) 임직원 및 설계사수는 '24년 6월 업무보고서 AI001 기준 작성

7-8-3)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집행)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공익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1,112	2,595	6,110	-	-
문화.예술.스포츠	문화, 스포츠 분야 지원	1,351	-	-	-	-
학술.교육	학술 포럼 지원	1,172	-	-	-	-
환경보호	환경정화활동 등	60	391	1,564	-	-
글로벌 사회공헌	-	-	-	-	-	-
공동사회공헌	손보협회 사회공헌분담금	650	-	-	-	-
서민금융	새희망힐링펀드	129	-	-	-	-
기타	-	-	-	-	-	-
총 계		4,474	2,986	7,674	-	-

주) 2024년 상반기 누계실적기준임

7-9.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 기간 : 2024.1.1.~2024.6.30

(단위 : 건, 천원, %)

회사명	위탁 업체명 ^{주1)}	구분	계약 기간	총 위탁 건수 ^{주2)}	총 위탁 수수료	위탁 비율 (%) ^{주3)}	지급 수수료 비율 (%) ^{주4)}
DB 손해 보험	인스비전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2,305,419	2,536,337	13.14	1.67
	미래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2,147,311	2,660,697	12.24	1.75
	에이원심사손해사정	정보입력	24.01.01~24.12.31	959,155	1,174,838	5.47	0.77
	다스카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936,726	1,115,146	5.34	0.73
	리더스손해사정	정보입력	24.01.01~24.12.31	674,996	796,931	3.85	0.52
	파란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646,069	784,945	3.68	0.52
	케이엠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631,219	769,518	3.60	0.51
	해오름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437,242	520,311	2.49	0.34
	탐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416,169	489,421	2.37	0.32
	해성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299,049	351,115	1.70	0.23
	베스트손해사정	정보입력	24.01.01~24.12.31	291,953	361,837	1.66	0.24
	Hits손해사정	정보입력	24.01.01~24.12.31	201,837	244,115	1.15	0.16
	이름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184,589	219,534	1.05	0.14
	DB CAS(자회사)	정보입력	24.01.01~24.12.31	116,809	121,090	0.67	0.08
	국제손해사정(주)	정보입력	24.01.01~24.12.31	102,309	119,728	0.58	0.08
	디에이치손해사정	정보입력	24.03.01~24.12.31	26,539	30,227	0.15	0.02
	DB CAS(자회사)	4종	24.01.01~24.12.31	940,644	21,720,307	5.36	14.29
	에이원심사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846,150	2,781,433	4.82	1.83
	리더스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548,925	2,878,301	3.13	1.89
	베스트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232,650	1,320,553	1.33	0.87
	C&S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38,701	649,200	0.22	0.43
	토탈손해사정	4종	24.02.01~24.12.31	37,179	227,764	0.21	0.15
	프라임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36,125	289,809	0.21	0.19
	타임즈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31,002	390,127	0.18	0.26
	디에이치손해사정	4종	24.03.01~24.12.31	19,872	103,808	0.11	0.07
	Hits(vina)손해사정	4종	24.02.08~24.12.31	1,630	26,423	0.01	0.02

유니온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256	76,733	0.00	0.05
TSA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193	62,025	0.00	0.04
에이플러스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139	43,290	0.00	0.03
유월비손해사정	4종	24.01.01~24.12.31	129	37,671	0.00	0.02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자회사)	3종	24.01.01~24.12.31	731,598	50,602,313	4.17	33.29
에스엔알손해사정	3종	24.01.01~24.12.31	68	74,672	0.00	0.05
AMP손해사정	3종	24.01.01~24.12.31	28	37,354	0.00	0.02
㈜케이엔에스손해사정	3종	24.01.01~24.12.31	26	10,454	0.00	0.01
뉴큐엠손해사정	3종	24.01.01~24.12.31	23	24,122	0.00	0.02
코리아자동차 손해사정(주)	3종	24.01.01~24.12.31	18	27,422	0.00	0.02
바다자동차손해사정	3종	24.01.01~24.12.31	8	17,874	0.00	0.01
아레스손해사정	3종	24.01.01~24.12.31	8	7,713	0.00	0.01
스카이손해사정	3종	23.01.01~23.12.31 (이월 처리건)	4	5,035	0.00	0.00
한결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43	98,528	0.00	0.06
한리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25	118,492	0.00	0.08
한바다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22	61,128	0.00	0.04
새한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21	57,253	0.00	0.04
모든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20	39,653	0.00	0.03
한일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17	60,733	0.00	0.04
한서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15	20,938	0.00	0.01
네스코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6	15,360	0.00	0.01
협성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4	11,659	0.00	0.01
푸름손해사정(주)	2종	24.04.01~25.03.31	4	14,706	0.00	0.01
다해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4,147	124,410	0.02	0.08
고려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917	868,688	0.01	0.57
한국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812	501,554	0.00	0.33
케이원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631	413,991	0.00	0.27
김스코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471	412,905	0.00	0.27
세계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451	298,504	0.00	0.20
태양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398	255,548	0.00	0.17
보람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308	200,197	0.00	0.13
인코크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303	420,452	0.00	0.28

드림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284	176,708	0.00	0.12
피에스엘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203	140,795	0.00	0.09
중앙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188	114,054	0.00	0.08
진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138	84,182	0.00	0.06
이앤에스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102	117,990	0.00	0.08
코마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100	56,148	0.00	0.04
태평양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91	54,781	0.00	0.04
카스코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89	50,036	0.00	0.03
에스에이에스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79	51,503	0.00	0.03
이퀼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10	18,140	0.00	0.01
서울손해사정(주)	1종	24.04.01~25.03.31	4	2,968	0.00	0.00
인스비전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784,338	3,090,023	4.47	2.03
해성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453,872	2,738,722	2.59	1.80
파란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431,337	3,095,337	2.46	2.04
미래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311,120	2,802,118	1.77	1.84
DB CSI(자회사)	1,4종	24.01.01~24.12.31	273,073	22,183,541	1.56	14.60
다스카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260,506	2,539,501	1.48	1.67
Hits손해사정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217,141	1,935,587	1.24	1.27
케이엠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187,914	1,213,086	1.07	0.80
탑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178,690	2,234,119	1.02	1.47
이름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146,212	3,994,430	0.83	2.63
해오름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73,753	1,418,652	0.42	0.93
티앤지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33,441	425,291	0.19	0.28
대양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24,181	209,579	0.14	0.14
에이원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12,383	1,534,174	0.07	1.01
클라우드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7,680	178,391	0.04	0.12
아세아손해사정(주)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2,116	776,907	0.01	0.51
솔로몬손해사정	1,4종	1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427	272,775	0.00	0.18
세종손해사정(주)	1,3종	1종:24.04.01~25.03.31 3종:24.01.01~24.12.31	705	567,163	0.00	0.37
국제손해사정(주)	1,2,4종	1,2종:24.04.01~25.03.31 4종:24.01.01~24.12.31	292,183	2,206,248	1.67	1.45
총계	-	-	17,543,742	151,987,841	100.00	100.00

주1) 위탁업체가 자회사인 경우 위탁업체명에 자회사임을 별도로 명기

- 주2) 업무위탁이 종결되어 수수료 지급 완료된 건 기준으로 작성
- 주3) 위탁비율 = 업체별 총 위탁 건수 / 전체 위탁건수
- 주4) 지급수수료 비율 = 업체별 총 수수료 지급액 / 전체 수수료 지급액
- 주5) 위탁업체 중 정보입력에 관한 위탁 업무는 상기 표 내 중 구분 상 '정보입력'으로 개별 기재함

7-10. 손해사정사 선임 등

7-10-1)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선임거부 건수 및 사유

○ 기간 : 2024.1.1.~2024.6.30.

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선임 거부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4년		2023년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상반기	115	0	21	0

주1) 대상 : 보험금이 청구된 건 중 손해사정 대상 건

주2) 선임 요청 건수 :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를 표시한 건수

주3) 선임 거부 건수 :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동의 거부한 건수

※ 상반기 공시자료의 경우 상반기만 표시(표에서 하반기, 연도전체 생략) 하여 작성

② 손해사정사 선임 거부 사유 (선임거부건수 없음)

7-10-2) 선임 동의 기준(2024년 8월 21일 현재)

- 별첨 참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따른 동의기준

I. 제정배경

1.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2020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함
2.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 확대운영을 통해 동의기준을 점차 보완 확대할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회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II. 손해보험 공통

다음의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은 거부할 수 있음

-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 (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사고

- 배상책임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청구권자간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재물보험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즉시 착수하지 않으면 손해액 증가 또는 보험목적물의 추가 훼손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함

손보험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에 따라 제정 운영)

제5조(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정한 동의 기준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법 제2조제1호나목(손해보험상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 (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III. 제3보험

실손의료비 단독청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사망, 후유장애, 진단비, 수술비 보험금 산정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아닌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서 과다, 과소산정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 지급보험금에 따른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부함

IV.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 동의 기준

1.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실손의료비 담보 단독 청구건의 선임 거부 기준

- 청구서류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 실손의료비 단독청구건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의 손해사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
(예: 실손의료비만을 청구하였으나 진단비에 대한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병원과 관련한 비급여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보험사기, 모럴해저드, 역선택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한 단순 차트 및 소견서 청구 의뢰건

3. 손해사정사 재선임 대상

(선임 거부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4종/신체 손해사정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손해사정사가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업체가 아닌 경우
-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손보험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에 따라 제정 운영)

제8조(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한 특례)

- ①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단,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 제5조제1항의 동의기준보다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VIII. 재무제표

8-1. 재무상태표 : 별첨 연결, 별도 검토보고서 참조

8-2. (포괄)손익계산서 : 별첨 연결, 별도 검토보고서 참조

8-3.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분석
: 별첨 연결, 별도 검토보고서 참조

8-4. 자본변동표 (또는 요약 자본변동표)
: 별첨 연결, 별도 검토보고서 참조

8-5. 현금흐름표 (또는 요약 현금흐름표)
: 별첨 연결, 별도 검토보고서 참조

8-6. 주식사항 (또는 선별적 주식사항)
: 별첨 연결, 별도 검토보고서 참조